

November 29, 2013

PVC Shrink 필름의 콜롬비아 반덤핑조사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해외 반덤핑조사 대응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국은 앞다투어 반덤핑조사, 상계관세조사(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세이프가드조치와 같은 무역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덤핑조사 및 상계관세조사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한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콜롬비아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반덤핑조사에 대응, 해당 기업의 수출품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2013년 3월 콜롬비아 상공부는 자국 내 최대의 PVC 필름 제조업체 중 하나인 Filmtex S.A.S. 社の 신청에 따라 중국 및 한국에서 수출된 PVC 필름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반덤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상공부에 의해 조사대상이 된 PVC 필름 제품에는 2012년 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콜롬비아에 수출된 PVC Rigid 필름 및 PVC Flexible 필름, 그리고 PVC Shrink 필름이 포함되었고, 법무법인 세종은 이중 PVC Shrink 필름을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대리하여 콜롬비아 상공부의 반덤핑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당초 콜롬비아 상공부는 조사신청인인 Filmtex 社の 주장 및 자체 조사에 근거해 한국산 PVC Rigid 필름의 덤핑마진을 112.91%로 산정하고 있었고, 반덤핑관세 부가가 거의 확실시 되던 PVC Rigid 필름과 PVC Shrink 필름은 모두 동일한 HS Code에 속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덤핑판정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덤핑의 성립요건에 관한 정교한 법리검토를 통해 PVC Shrink 필름은 PVC Rigid 필름에 비해 추가적인 공정과정을 거쳐 제조되고, 그 결과 PVC Rigid 필름과는 별개의 속성을 가지며, 무엇보다 시장이 다르다는 점에서 PVC Rigid 필름과 동종상품(like product)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덤핑조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상공부는 PVC 필름의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그리고 콜롬비아 국내 제조업체(제소자)들의 주장을 청취한 후 2013년 11월 덤핑최종판정을 내렸으며, 동 판정 결과 중국 및 한국에서 콜롬비아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PVC 필름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이 대리한 기업이 수출하는 PVC Shrink 필름은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신흥 콜롬비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특정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조사가 수입국에 의해 개시될 경우 조사 초기단계부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반덤핑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수출품에 대한 정보, 수출판매구조에 대한 정보, 수출품의 정상가격 및 수출가격 등 수입국의 조사당국이 요구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최초 1-2달 사이에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데, 이때 조사당국의 요구에 안이하게 대응하거나 오로지 덤핑마진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에만 집중할 경우 중국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조사 초기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의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확고한 법리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수립,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된 주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콜롬비아 반덤핑조사 사례에서도 법무법인 세종은 반덤핑조사 초기단계부터 콜롬비아 당국의 주요 표적은 PVC Rigid 필름이라고 판단하고 PVC Rigid 필름과 PVC Shrink 필름 간의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두 상품이 동종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PVC Rigid 필름에 대해 산정한 덤핑마진을 근거로 PVC Shrink 필름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PVC Rigid 필름을 위시한 다른 PVC 필름 제품들로부터 PVC Shrink 필름을 차별화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김성근 대표변호사 | TEL. 02 316 4218 | E-Mail. sgkim@shinkim.com |
| ● 정하늘 미국변호사 | TEL. 02 316 1714 | E-Mail. hnjung@shinkim.com |
| ● 정인화 선임회계사 | TEL. 02 316 4219 | E-Mail. ihchung@shinkim.com |
| ● 이남주 회계사 | TEL. 02 316 4675 | E-Mail. njlee@shinkim.com |